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65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1. 가. 나. 오OO (OOOOOOO-OOOOOOOO)
주거
등록기준지
2. 나. 진국철 (8000000-OOOOOOOO)
주거

검 사 이OO(기소), 탁OO(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OO(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피고인 진국철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하O에 대한 상해

피고인 오OO은 2021. 10. 3. 01:20경 서울 OO에 있는 ‘OO노래방’ 5번방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하O(남, O세), 피해자 최OO(남, O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오OO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하O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니가 노래방 오자고 했으니 니가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오OO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하O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최O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 최OO의 오른쪽 눈을 약 3회 찌르고, 계속해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위 최OO의 머리 부위를 마이크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최O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하O, 최OO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진국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최OO), 상해진단서(하O)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오OO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하O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니가 노래방 오자고 했으니 니가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진국철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사이 최OO과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 오OO이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와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하O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나. 판단

증인 하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진국철에게 병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맞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맞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 진국철이 있었고, 최OO이 병으로 때렸다고 알려주었으며, 자신도 무언가 딱딱한 것으로 맞았기 때문에 주먹은 아니고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맞고 나서 정신이 혼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다.

그런데 증인 최O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진국철이 하O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진국철이 주먹을 막 쥐두르고 하면서 하O을 때렸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보았더라도 기억을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피고인 진국철이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인

지” 묻는 검사의 추가질문에 “정확하게 하O 씨 때리는 거 정확하게 제가 못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증인 하O이 들었다고 하는 최OO의 진술과 최OO이 경찰에서 하였다고 하는 진술의 내용이 달라 최OO이 피고인 진국철의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증인 하O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에 통증을 느낀 후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 진국철이 보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당시 싸움이 발생하여 서로 엉켜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진국철이 하O을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진국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피고인 오OO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판사 노OO _____